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 번 호 | 18452 |
|--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24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민형배 · 이성만

김성환 · 장철민 · 변재일

오영환 · 김철민 · 신정훈

김태년 · 한병도 · 양경숙

김정호 · 민병덕 · 기동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「형법」 제28장 · 제40장(제360조 제외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)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2)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3)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,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

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7년이 지날 때까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임.

이에, ‘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’을 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(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).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

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가목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형의”를 “금고 이상의 형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